

韓國 老年學 業績에 對한 調查研究

Research on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Gerontology in Korea

高麗大學校 家政教育科

講 師 金 兌 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Lecturer, Tae Hyeun Kim

<目 次>

- | | |
|---------------------|--------------------|
| I. 研究의 目的 및 方法 | 3. 職業, 隱退, 孤獨 및 疎外 |
| II. 問題의 提起 | 4. 高齡者의 家庭生活 |
| III. 本 論 | 5. 保健 및 醫學的인 側面 |
| 1. 老年學의 展開過程 및 概念規定 | 6. 老人福祉와 關聯된 問題 |
| 2. 高齡者의 經濟的 生活 | IV. 結 論 |

<Abstract>

It has been more than ten years that the studies in the field of social gerontology in Korea had begun. But there had been no empirical study on this field about the published articles.

This study intend to analyze and evaluate those achievements synthetically focusing on the past articles on the aged in Korea which had been published till March, 1980. And also intend to prepare a movement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and fixing those past articl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ocial gerontology in Korea.

Used raw materials are as follows; 1) research papers of every college 2) thesis of annex research institute of every college 3) reports of academic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4) 42 copies of raw materials of semina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d 3 independent volumes.

In order to describe what kind of researches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social gerontology, categorized in six items focusing on the selected studies.

- 1) Process of unfolding and definitions of social gerontology
- 2) Economic life of old people
- 3) Works, Retirement, loneliness and alienation of the old people
- 4) Domestic management of old people
- 5) Medical and health aspects of old people
- 6) Welfare of old people

These problems has been exposed through this research. Firstly almost every studies are descriptive and diagnostic rather than scientific for the theoretic development of gerontology. Secondl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the outcome of

researches in the broader and deeper sense those researches has been done in regional level. Thirdly there hadn't been any researches over the entire country in the governmental level. Thus it is impossible to deduce and analyze comparatively on the ground of governmental data.

I. 研究의 目的 및 方法

本論文은 1960年代부터 1980年 3月까지 發表된 韓國의 高齡者에 對한 既存研究를 中心으로 老人問題의 展開狀況, 研究方向 및 問題點 등을 綜合的으로 分析 評價하여 이들의 業績이 社會에서 再活用 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함과 同時에 韓國 老年學의 整地作業過程에 貢獻하고자 한다. 使用된 資料는 ① 各大學의 學術誌 ② 同부설 研究所의 論文 ③ 各學術團體 및 學會의 論文集 ④ 세미나資料 및 博士學位論文 등 42편과 단행본 3권이다. 선정된 45편을 中心으로 老年學 分野에서 어떤 종류의 研究들이 行해져 왔는지 記述하기 위해서 (1) 老年學의 展開와 概念規定 (2) 高齡者의 經濟的生活 (3) 職業, 隱退, 孤獨 및 疎外 (4) 高齡者의 家庭生活 (5) 高齡者의 保健 및 醫學의 側面 (6) 老人福祉와 關聯된 問題 등으로 分類 검토하였다.

II. 問題의 提起

科學技術의 發達과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平均壽命이 延長되고 出生率, 死亡率의 低下경향으로 人口의 老齡化가 전세계적인 現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增加하는 老人人口를 둘러싼 제한 問題들이 家族構造의 變化(急激한 家口의 移動과 家族의 世代的 分化), 職業構造 및 價値觀의 變化와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등으로 老人問題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西歐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努力을 傾注해 왔으나 問題의 급속한 深化때문에, 老人들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한 大規模의 福祉事業을 벌려야 했다. 西歐와 比較한다면 아직 韓國은 問題의 發生段階

에 不過하다고 하겠으나, 社會構造의 급진적인 變化추세로 보아 老人問題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深化되어 나갈 것이 豫想된다. 이에 對處해 나가기 위해서는 老年學 研究가 보다 具體的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體系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韓國에서도 老年學에 對한 研究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年前인 1970年 初부터의 일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 發表된 45여편의 論文과 實態調査들은 극히 단편적인 것들이기는 했으나 모두가 老人의 問題點들을 다각도로 지적했고 그 對策을 呼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社會의 注意를 환기시키지 못한 狀況에서 死藏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本 論

1. 老年學의 展開와 概念規定

老年學(gerontology)이 1944년에 英國에서 제창되기 以前의 그 發達過程은 ① 第一期(1830~1920年): 近代의 研究의 發端, ② 第二期(1920~1940年): 老年期(old age, senescence)에 관한 醫學的 考察이 겨우 組織的으로 이루어져 老年醫學의 概念이 점차 一般人에게 알려진 時期(geriatrics), ③ 第三期(1945年 이후): 老年學이 탄생된 時期로 그 研究가 단순한 老年醫學, 또는 老年病學으로서만 아니라 心理學, 社會學, 法律學, 經濟學, 家政學 및 社會福祉에 관한 諸 社會科學도 그 研究에 가담하게 된 時期(金相圭 76, 李允淑 79, 韓昌榮 80)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發展段階를 거쳐 1945年 이후에 老年學의 研究가 더욱 발전, 확충되었는데, 韓國에 있어서는 1970年頃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老人의 概念을 規定함에 있어서 老年은 하나의 過程이며 이는 身體的, 精神的, 文化的 및 社會的인 要因 등을 고려해야 한다. 老年의 概念을 規定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考慮할 事項은 ① 一般적으로 老人이라고 認定되는 年齡, ② 本人 自身이 老人이 되어감을 느끼는 年齡, ③ 老年의 日常生活에 障礙를 주는 程度 등을 考慮할 點이라고 본다(金海雲, 78). 그러므로 이러한 概念을 좇아 研究者의 目的에 따라 老年의 年齡을 區分하고 있다. 대체로 韓國에서는 選甲을 기준으로 하여 60세로 規定하거나, 外國의 研究報告書나 生活保護法 및 社會保障制度의 適用대상이 65세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의 時期나 要因에 對한 研究등에서 보면(全宰一, 78) 老人自身이 老人이라고 생각되는 年齡은 60세 이상이 57.8%로 가장 많다(韓昌榮, 79). 그러나 1970年 이전의 研究는 50세 이상도 老人의 범주에 넣기도 하였다(徐英淑, 69). 한편 老年期를 三期로 區分하여 ① 老年初期: 56~65세, ② 老年中期: 66~75세 ③ 老年後期: 75세 이상으로 區分하여 研究하기도 하였다(金相圭, 76).

2. 高齡者의 經濟的 生活

老人이 當면한 가장 困難한 問題는 “경제적 困難”이 41.4%, “餘暇時間이 많아서”가 8.1%, “親舊가 없어서”가 4.3%이며(河相洛, 72), 또 다른 調査에서는 “經濟的 빈곤”이 23.5%, “健康”이 18.8%, “孤獨”이 11.2%, “役割이 없다.”가 10.0%(李英夏, 75) 등으로 대부분의 老人이 經濟的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老人의 經濟的인 獨立性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76) 老後의 生活費부담은 “老人本人”이 26.8%, “子女”가 44.9%, “國家나 社會”가 10.5%로 나타나 아직 韓國老人들은 自身이 經濟的으로 獨立된 生活를 영위할 수가 없고 子女에 의해서 대부분 經濟的扶養을 받고 있다. 子女들의 扶養形態를 보면 老後 父母에 對한 生活費補助態度 調査에서(人口問題研究所, 71) “經濟的 형편에 따라 부담한다.”가 39.4%, “아들이 함께 부담한다.”가 36.0%, “長子가 부담해야 한다.”가 17.0%로서 扶養책임이 長子에서 能力있는 子女로 變化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年의 時差를 두고(71→79) 調査한 老人의 生計解決方案에 對한 意識構造 調査에서(朴在侃,

79b) “政府에서 對策을 세워주기 바람”이 38.8%, “自身이 解決”이 36.0%, “子女에게 依支”가 23.8%로 나타나고 있어 漸進的으로 老後生活保障이 子息의 責任이라는 생각에서 후퇴하고 있다. 收入의 근원을 보면 月收入의 出處는 “子女들”이 72.8%, “老人自身の 소득”이 20.8%, “국가부조”가 0.6%이며(李効再外, 79), 용돈의 出處는 “子女”가 70.1%, “老人自身”이 20.1%, “친척”이 2.3%(李英夏, 75)이다. 이러한 일련의 調査에서 어느 정도 老人問題를 解決한 西歐社會에서는 人間的紐帶가 심각한 問題인데 反하여 韓國老人은 物質的, 精神的 二重의 압력으로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老人의 家計支出에 관한 자세한 研究가 미비하여 韓國老人의 經濟生活에 對한 理論的 分析에는 충분치 못하다.

3. 職業, 隱退, 孤獨 및 疎外

老人層은 老人文化를 가지고 있다. 老人文化란 老人들의 生活方式이고 老人들의 世界에서만 통하는 獨特한 趣味, 態度, 思考 一體感등을 말한다. 社會가 老人層에게 要求하는 期待와 複合的인 所産이라고 말할 수 있다. 老人들의 社會的 役割은 여기서 나오며 老人文化란 老人들의 社會的 役割을 規定하는 文化라고도 말할 수 있다(高永復, 79). 韓國에서 老人文化가 確立되지 않고 있는 것은 老人들의 職業參與 및 疎外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高齡人口의 扶養人口指數가 증가함에 따라 韓國과 같이 低賃金勞動者가 많은 國家에서는 젊은층의 소득으로서는 老人의 扶養이 점차 힘들게 되고 있다. 老人自身들도 “건강하면 職業을 가져야 한다”가 79.7%(朴在侃, 79c), “능력과 健康이 허락하면 職業을 가져야 한다.”가 50.2%로 나타나고 있어(李効再外, 79), 老人들의 勞動에의 參與欲求가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老人들의 職業參與要因은 “일하지 않으면 生活困難”이 68.5%, “역활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가 14.5%, “심심풀이로”가 11.3%, “건강에 좋기 때문”이 3.2% 등이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76). 職業有無와 老後生活만족도의 비교에서 職業“有”인 老人의 55.5%, “無”인 老人의 33.8%가 老後生活를 만족하고 있다(李効再外,

79). 社會參與 “有”인 老人이 “無”인 老人에 비해 總合老化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洪美杓, 80). Neugarten의 研究에서도 老人들이 社會參與범위가 클수록, 그리고 中年期에 가졌던 活動類型과 별 차이가 없을 수록 老後에 生の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確認했다. 이러한 研究들은 職業을 원하는 것이 經濟的인 問題, 健康問題 뿐 아니라 生産的이고 유익한 活動에 參與함으로써 보람있는 生을 보내고자 하는 의지도 內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濟州島 老人들이 生에 對해 만족하고 長壽하는 要因中의 하나도 土地를 접하면서 끊임없이 勞動을 하여 役割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었다(韓昌樂, 78, 金允玄, 80). 한편 老人의 職種은 事務員, 代書人, 숙직경비원, 담배소경영 등 지극히 單純職種에 불과하다(朴泰龍, 78). 老人自身이 원하는 職種은 원예가 25.7%, 목축업이 16.7%, 복덕방 및 매점이 각각 13.2%, 수공업이 12.5% 순서이다(朴在侃, 79c). 이는 老人을 위한 職業再調整, 再就業可能職種의 開發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身體的, 精神的 經濟的 면에서 유익한 職業에의 參與意欲이 隱退로써 좌절될 때 孤獨 및 疎外 等 많은 충격에 直面하게 된다. 어느 職業에서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職業이 規定하는 公式 및 非公式的 退職年齡은 現在社會에서 個人이 職業經歷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地位와 役割의 喪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役割關係가 그에게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現代社會에서 老人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役割關係의 性格과 內容이 무엇인지를 간에 그것은 분명히 孤獨과 疎外라는 老人 特有的 問題를 야기하고 있다(梁瑋, 79). 고용되지 않은 老人들中 얼마나 많은 老人이 일하기를 원하며, 그 理由가 무엇인가에 관한 研究와 退職年齡에 도달한 老人이 직면한 問題 및 隱退의 충격에 對한 광범위한 研究와 分析이 더욱 요청된다.

4. 高齡者의 家庭生活

韓國老人에게는 經濟的 貧困, 健康問題와 함께 子女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이며 問題가 되고 있다. 子女와의 同居率은 여러 調查에서 83.

7%(李英夏, 75), 84.0%(李効再外, 79), 72.6%(朴泰龍, 78)으로 나타났으며, 同居意識은 “子女가 원하면 同居하고 싶다.”가 各各 85.1%(李英夏), 66.3%(李効再外)등으로 나타나 産業化와 核家族化로 家族構造가 많이 變化하고 있지만 여전히 子女와 同居하고 있는 老人이 많으며 同居意識도 높다. 한편 別居理由로는 “서로 불편해서 不和하기 쉬워”가 35.0%, “子息들이 불편해 하므로”가 37.5%, “自身이 불편해서”가 25.0%이다(玄斗日, 76). 李効再外(79)의 研究에서는 “子女의 주택 및 직장문제”가 28.6%, “父母自身이 원하지 않음”이 37.3%이며, 同居形態와 老人들의 孤獨問題와를 比較한 결과 子女와의 동거여부가 孤獨의 問題에 意味있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老人家口와 子女家口와의 居住距離는 “도보로 20~30분거리”가 45.3%, “교통편 30~40분거리”가 35.1%, “연집”이 13.5%로써(柳炯銀外, 77), 外國의 경우 居住距離는 “車로 30分 以內에 있는 것이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接觸頻度는 意外로 높다”라는 研究와 (Townsend, 68) 일치한다. 扶養狀況에서도 子女들로 부터 扶養을 받고 있는 老人 (69.5%)이 經濟的 獨立生活老人 (25.4%)보다 높게 나타나 아직 子女들로 부터 扶養받고 있는 老人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經濟的 獨立生活老人이 25.4%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때 점차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朴泰龍, 78). 家族에 있어서 地位面을 보면 가사결정권 소재가 “老人自身”이 12.3%, “子夫婦”가 29.7%, “질충”이 49.8%이며(李英夏, 75), 家事命令權에 對해서는 “나이가 많아도 自身에게 있어야 한다” (33.0%)가 “나이가 많아지면 子女에게 위임해야 한다” (35.9%)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家事命令權에 對해서 自身이 가질려는 老人이 상당수에 達하고 있어 이를 묵과 할 수는 없다(朴泰龍, 78). 그러므로 意識面에서 교수하려고 하는 地位가, 실제로 상실당하고 있는 地位의 變化에 따른 役割을 規定해 주는 규범이 없다는 問題가 提起된다. 규범상실로 인해 發生하는 孤獨感, 허무감은 더욱 增加한다. 家事參與에서 “집안일을 責任지고 있다”(36.9%)와 “때때로 돕고 있다”(43.8%)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20%)보다 높게

나타나 아직 家事參與老人이 많음을 알 수 있다(徐英淑, 69). 그외에 權圭植(73)은 老人을 모시고 사는 母孀의 態度를 調查했으며, 金容旭外(77)는 姑婦間的 問題와 韓國老父母의 私的扶養問題에 對한 法的인 해석을 다루었다.

5. 保健 및 醫學的인 側面

Rowlatt는 老化란 個體가 死亡이란 중착역에 到達할 때까지 環境에 對한 그의 生理的 適應力을 漸進的으로 喪失해 가는 過程이라 定義하였다. 老年期의 病은 病理學的으로는 組織再生의 감소로 인한 실질세포의 감소와 生化학적으로는 실질세포의 감소로 인한 물질대사의 장애가 원인이다(李根厚, 77). 老人의 疾病의 종류는 神經系 및 感覺器疾患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筋肉 및 骨格疾患, 循環器疾患, 呼吸器疾患 순서이다(金貞順外, 77). 李允淑(76)은 韓國의 高齡者들의 健康의 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集團健康診斷에 利用되고 있는 「cornell」 健康指標를 適用하여 試圖하였다. 家族同居 老人群과 養老院老人群을 比較한 결과 養老院에 收容되고 있는 高齡者들이 家族同居群에 비해 보다 더 精神的으로 安定된 生活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家庭老人은 依存的, 慾求表現에 있어서 衝動的이고 退行的인 感情表現과 우울증을 나타내고 있고 反面 施設老人에서는 現實로부터 徹退되어 感情的 鈍麻와 否定的, 自己中心的, 孤立的인 面을 나타내고 있다. 對象老人들 모두에 있어서 自覺的인 一般的健康狀態에 對해서는 比較的 良好한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많았다(李元鎔外, 72). 여러 조사결과 "아주 건강하다"가 33.8%, "보통이다"가 29.7%, "다소 병이 있다"가 32.6% "누워서 산다"가 3.9%(玄斗日, 76),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가 44.5%, "나이에 비해 보통이다"가 33.0% "나이에 비해 최악하다"가 22.5%이다(權圭植, 73). 健康을 위해서는 달리기가 효력이 있어 달리기 트레이닝을 實施하고 있는 中 高年者의 健康狀態나 體力이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있는 一般中高年者와 比較해서 매우 良好한 健康狀態이라는 研究가 있다(金光輝, 79). 老人들의 健康狀態가 良好하고 健康을 유지

하기 위해서 많은 努力을 傾注하나 老化現象에 따라 疾病이 비교적 頻번히 發生하므로 疾病으로 인한 老人自身이나 家族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老人福祉와 關聯된 問題

우리나라 老人福祉向上, 發展을 위한 첫째 課題는 우리社會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父母奉養과 敬老思想을 그대로 維持, 發展시켜 各己 家庭內의 老父母를 成長한 子女가 一次的으로 奉養토록 하고 社會保障도 老人扶養責任者에 對하여 支援를 擴大해 나가는 方向으로 解決해 나가야 한다(李斗護, 79)고 하나, 어떤 時機에 가서는 이러한 家族形成慣習體系가 破壞될 것이며 이에 代置되는 새로운 別居指向의인 家族體系가 確立될 것이고 別居率이 현저히 增大되는 西歐式 生活形態로 接近될 것이다(朴在侃, 79). 그러므로 이에 對한 對策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Shenfield(57)은 老人政策을 ① 職業對策, ② 年金制度, ③ 住宅對策 ④ 醫療 service, ⑤ 收容保護 및 在宅老人의 福祉 service 등으로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韓昌榮(79)의 老人福祉政策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본다.

① 經濟的 安定策의 마련

修正擴大家族(modified extended family)이나 修正直系家族(modified stem family)에의 展望 등은 老人家族의 經濟的 獨立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合理的인 扶養問題의 해결은 우선 老人의 經濟的 獨立이라는 것을 考慮하지 않고서는 期待할 수 없다(玄斗日, 73). 現在 生活保護法에서 「年齡 65세 以上の 노취자로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있어도 能力이 없는 者」로 이중적인 制限을 하여 對象者를 극히 좁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조속한 실시가 있어야 한다.

② 職業的 安定策

停年制度의 철폐 및 停年退職의 延長, 就業 알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의료, 衛生 其他 保健의 增進策

老人醫療保險制度가 土着化 되어야 한다.

④ 家庭的 安定(住宅, 日常生活保障)

在家老人들에게는 아무런 生活對策이 없기 때문

에 앞으로 對策없는 老後生活問題가 深刻한 社會問題로 發展할 可能性이 크다(金國道, 79b).

⑤ 社會的 協同의 機會 제공

조직화된 老人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老人俱樂部運動 또는 老人會, 敬老堂의 확충 및 向上이 이루어져야 한다. 敬老堂에 加入한 理由가 89.5%나 되는 절대다수가 “親舊와 談笑하고 消日하기 위해서”로써 매우 좁고 消極的인 機能밖에 擔當하고 있지 않다. 老人들에 對한 任意集團의 機能은 老人들의 幸福을 創造하는 學習과 協力の 道場이 되어서 現代社會를 똑바로 理解하고 보나 健全하고 올바른 市民이 되기 위한 研究의 道場이 되어야 한다(權圭植, 73).

⑥ 教育의 機會 제공

高度知識과 產業社會에서 生存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要求되는 것은 人間의 한 平生동안에 걸친 學習 또는 教育이 불가피하다(金海雲, 78). 老人은 나이가 많으니 社會的으로 家庭的으로 保護를 받는 것은 當然한 일로 아는 安易한 생각과 態度를 버리고 老人各者가 老人文化를 定立할 수 있도록(金海雲, 79) 教育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老人學校의 운영에 對한 研究가 있어야 한다. 老人學校를 附設하는 機關으로 適合한 기관은 “국민학교가 좋다”는 老人이 40.4%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柳炯鎭外, 77).

⑦ 文化, 娛樂의 機會增大

老人을 위한 圖書館制度, 敬老日의 制定, 敬老優待制의 實施, 老人觀光政策이 필요하다. 새로운 概念의 孝가 定立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孝行을 史的資料에 依據하여 孝의 本質, 實際, 施策等を 中心으로 考察하여 現代社會에 알맞은 倫理觀을 강구하여야 한다(金鎬坤, 75, 朴泰龍, 77).

⑧ 養老院施設의 質的, 量的 확충

우리나라에는 老後의 經濟度와 健康度를 고려한 養老院이 없고 단지 無料養老院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老後生活에 適合한 有料養老院이 있다면 入所할 意向이 있는지를 說問한 結果 36.5%가 入所할 意向을 보여(朴泰龍, 78), 子女와의 獨立을 願하는 여유 있는 階層을 위해서 또는 低所得層

老人中 分層을 願하는 者를 위한 有料養老院의 開設이 必要하다(李効再外, 79). 現在 養老院에 入所한 老人의 入所動機는 “現在生活保障이 안되므로”가 58.9%, “子息이 없어서”가 17.2%,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가 9.4%, “子息에게 負擔을 주기 싫어서”가 1.4%이다(張燦外 75).

⑨ 老人에 對한 Case Work의 적용

老人의 心理社會的 側面的 諸要因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專門社會福祉事業의 한 方法인 social case work의 知識과 技術 및 具體的인 方法을 活用하여 老人問題를 治療하기 위한 적용方法을 模索하여야 한다(徐廷德, 78).

⑩ 活動障礙老人을 위한 家事助力員制度和 시설의 건립(柳炯鎭外, 77).

⑪ 研究機關의 育成補助

美國, 英國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政府나 社會團體에서 老後保障制度의 확립을 위하여 大規模로 老人問題研究機關에 研究費를 지원해 왔다. 우리나라에도 老人問題를 研究하기 위한 機關이 近者에 設立되고 있는데, 이러한 研究機關에 대한 支援과 研究費 補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以上에서 韓國에 있어서 高齡者에 對한 研究를 論文 42편과 단행본 3권을 中心으로 (1) 老年學의 展開와 概念規定 (2) 高齡者의 經濟的 生活 (3) 職業, 隱退, 孤獨 및 疎外 (4) 高齡者의 家庭生活 (5) 保健 및 醫學的인 側面 (6) 老人福祉와 關聯된 問題 등으로 分類하여 考察하였다. 本 研究에서 드러난 問題點은 대부분의 研究가 理論的인 發展을 위한 科學的인 研究라기 보다 描寫的이고 診斷的인 研究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研究가 地域單位(local level)에서 行해졌기 때문에 그 研究成果가 斷片的인 것에 그쳤다. 方法論的인 面에서 質問紙를 사용할 때 質問紙法外에 面接法이나 現場研究도 竝行되어야만 妥當度나 信賴度를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러한 努力이 不足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老人의 問題點을 推論하거나 相互比較分析 또는 綜合判斷하기에는 多少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研究課題로는 혼자 居

住하는 老人 및 寢床老人에 對한 研究; 老人의 家計支出, 退職年齡에 도달한 老人이 직면한 問題와 隱退의 충격에 對한 研究, 活動障礙老人들의 生活 實態 등의 研究가 全國的인 規模에서 廣範圍하게 實施될 것이 要望된다.

參 考 文 獻

- 高永復, “韓國의 老人世代와 老人文化”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老人福祉」, (서울: 韓國老人問題研究所, 1979)
- 權圭植, “核家族化와 老人問題”, 「省谷論叢」 4, 1973.
- 權圭赫, “施設收容老人의 問題와 對策”,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老人福祉」, 1979.
- 金光輝, “中·高年者들을 위한 달리기 運動의 處方”, 「老人福祉研究」 2輯, (大邱: 韓國社會事業大學 老人福祉研究所, 1979).
- 金國道, “低所得層의 老人問題와 그 對策” 「老年學의 展望」 (서울: 同德女子大學老人保健福祉研究所, 1979a).
- 金國道, “우리의 老人福祉政策”,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老人福祉」, 1979b.
- 金國道, “韓國老人福祉政策研究”, (서울: 韓國法人問題研究所出版部, 1980)
- 金錫坤, “孝의 現代教育의 理解를 위한 基礎研究—四書를 中心으로—” 全州敎大論文集 12, 1975.
- 金相圭, 「老人福祉의 體系的 研究」 (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 1976).
- 金相圭, “老人問題와 그 對策”—80年代의 診斷과 處方—, 「老人福祉研究」 第2輯, 1979.
- 金容旭, 李琦淑, 「韓國의 姑婦關係」 (서울: 靑林閣, 1977).
- 金貞順外, “韓國農村住民의 傷病樣相”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疫學敎室, 1977.
- 金兌玄, “濟州島의 老人生活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1호, 1980.
- 金海雲, “現代産業社會의 老人問題와 教育” 「社會教育研究」 창간호 韓國社會教育協議會, 1978.
- 金海雲, “産業社會에 따른 老人問題와 教育” 「老人福祉研究」 第2輯, 1979.
- 朴在侃, 「老人問題와 對策」 (서울: 二友出版社, 1979a).
- 朴在侃, “未來의 老人扶養에 對處하는 老年學의 布石” 「老年學의 展望」, 1979b.
- 朴在侃, “高齡者의 定年, 人力活用 및 生計對策”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老人福祉」, 1979c.
- 朴泰龍, “韓國傳統社會에 있어서의 孝行에 關한 史的考察” 韓國社會事業大學 併設學校論文集 第2輯, (대구: 韓國社會事業大學出版部, 1977)
- 朴泰龍, “在宅老人의 生活態度에 關한 調查研究”, 「老人福祉」 第1輯, 1978.
- 朴泰龍, “韓國의 老人福祉關係立法에 關한 小考”, 「老人福祉研究」 第2輯, 1979.
- 徐英淑, “家庭에 있어서의 老人問題” 「대한가정학회지」 제7호 1969.
- 徐廷德, 金泰鎮, “老人福祉事業에 있어서 social case work 方法의 適用”, 「老人福祉研究」 第一輯, 1978.
- 梁瑤, “現代社會에서의 青少年과 老人問題” 「韓國社會開發研究」 <I> 亞細亞問題研究所 (서울: 高大出版部, 1979)
- 柳炯鎮, 河仁鎬, “老人福祉問題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韓國教育問題研究所, 1977.
- 李根厚, “老人의 精神醫學의 問題” 「韓國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 韓國社會科學研究所, 1977.
- 李斗護, “80年代와 우리의 老人政策” 「産業社會에 있어서 老人福祉」, 1979.
- 李英夏, “韓國社會에 있어서 老人問題와 그 解決을 위한 方案”, 公州師大 論文輯, 1975.
- 李元鎔, 宋南玉, “韓國人 家庭老人과 施設老人의 精神健康에 對한 比較研究” 高麗醫大雜誌, Vol. 9, No. 2, 1972.
- 李允淑, “老齡者에 對한 研究”—I. 社會醫學의 實態調查, II. C.M.I 調查表에 의한 健康實態—” 「同大論叢」 第六輯, 同德女子大學, 1976.
- 李允淑, “老年學의 歷史의 배경과 現實의 課題”, 「老年學의 展望」 1976.
- 李効再, 池淳, 朴敏子, “韓國低所得層 老人生活에 關한 社會, 經濟 및 空間問題研究” 梨大「論叢」 梨花女子大學校, 1979.

- 張璵, 朴泰龍, “施設老人의 生活實態에 關한 研究—大邱地方의 養老院을 中心으로—”, 「社會福祉研究」第4輯(大邱: 韓國社會事業大學, 社會福祉研究所, 1975).
- 全宰一, “老人으로서 自己概念의 時期와 要因에 關한 研究” 「老人福祉研究」第一輯, 1978.
- 崔顯南, “社會속의 老人의 마음”,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老人福祉」1979.
- 河相洛, “家庭 및 社會에 있어 老人의 地位 및 權위의 변천”, 1972.
- 河相洛, “韓國老人의 社會福祉政策”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老人問題」, 1972.
- 韓昌榮, 「濟州道 老人論攷」, (서울: 韓一文化社, 1978.)
- 韓昌榮, “韓國老人福祉의 行政과 法制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9.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노인세대(결손가정) 조사연구보고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76.
- 許程, “韓國老人의 保健과 福祉” 「老年學의 展望」1979.
- 玄斗日, “老人問題에 關한 研究” 建大學術誌 16, 1973.
- 玄斗日, “韓國老人의 生活構造에 關한 社會學的 研究” 建國大學校學術誌 20輯, 1976.
- 玄斗日, “韓國의 老人問題”,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老人問題」, 1977.
- 洪美杓, “配偶者 및 社會參與 有無에 따른 老化度 比較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1호, 1980.
- Beverly A. Yawney & Darrell L. Slover, “Relocation of the elderly”, *Social work*, Vol. 18, No.3, 1973.
- Brocklehurst, J.C., *Textbook of Geriatric Medicine & Gerontology*, Churchill Livingstone, 1973.
- Dasaku Maeda,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in Japan”, 「社會老年學」 No.5, 東京大學出版會, 1977.
- Irving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74.
- Neugarten, B.L., Havighurst, R.J. & Tobin, S.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1961.
- Shenfield, B.E., *Social Policies for old Age*, 1957.
- Shanas, E. Townsend, P. & Wedderburn, *old People in Three Industrial Societies*, 1968.
- Tobin, Sheldon, & Bernice Neugarten,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16, 1961.